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서 등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이나 일몰기한이 미설정되어 해당 조문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재난안전제품 기존 인증마크를 재난안전산업 대표브랜드('21.5. 개발)로 변경함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개정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의8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 및 별지 제20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제 품 명 |

업 체 명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
(주 소)

유효기간 |

위 제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 120g/㎡]

Cert. No.



Certificate of Disaster Safety Product

Product |

Company Name |
(Name of Representative)

Business Registration |
Number (Date of Birth)

Address |

Term of Validity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roduct has been designated as a disaster safety produ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4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8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19-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MM. DD. YYY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public of Korea

직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u> <u>부장관은 제19조의8 재난안전</u> <u>제품 인증 신청서 등에 대해 20</u> <u>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u> <u>(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u> <u>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u> <u>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u> <u>한다.</u>